

지 방 세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대안)

의 안 번 호	
------------	--

제안연월일 : 2024. 12.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자	발의일	심 사 경 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2202685)	2024.8.9.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7.) 상정/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8.) 상정/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9.) 상정/의결(대안반영 폐기)
	백승아의원 (2204046)	2024.9.13.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7.) 상정/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8.) 상정/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9.) 상정/의결(대안반영 폐기)

	임광현의원 (2204152)	2024.9.20.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7.) 상정/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8.) 상정/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9.) 상정/의결(대안반영 폐기)
	차규근의원 (2205025)	2024.10.30.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전체회의(24.11.2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7.) 상정/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8.) 상정/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9.) 상정/의결(대안반영 폐기)
	정부 (2205362)	2024.11.7.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전체회의(24.11.2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7.) 상정/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8.) 상정/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9.) 상정/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12.19.)는 위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2.23.)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및 담배 소비세 공제·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자 사업소를 신설한 지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에도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폐지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시행시기 및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 적용 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고,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안 제9조제7항제2호)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폐차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던 것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말소등록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나.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요건 완화(안 제63조제1항제2호)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를 포장 또는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합리화(안 제84조의5제2항)

사업소 신설 시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달부터 1년 동안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삭제 등)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현행 과세 체계를 유지함.

마.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안 제103조의20제1항)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바.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유예(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가상자산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 규정의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장함.

사.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 연장(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또는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

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27년 1월 1일 영구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

3. 부대의견

가.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급주택 기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6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나.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폐기물매립시설·소각시설 인근 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유치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6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제2호 중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로 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반입된 경우”를 “반입된 경우 또는 같은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된 경우”로 한다.

제8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 동안”을 “1년 동안(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달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년 전”을 “1년 전(해당 월의 과거 1년 내에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에는 신설한 달을 말한다)”으로 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87조의6, 제87조의7, 제94조”를 “제9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호, 제2호의2”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제3항제4호다목을 삭제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장제2절의2(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제1항 중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2제3호 중 “제103조의9제2항”을 “제103조의8, 제103조의9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3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1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3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제10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8(기장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제103조의20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59제1항제1호가목 중 “매매차익,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매매차익”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74조, 제87조의23”을 “제74조”로, “매매차익예정신고, 같은 법 제87조의21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매매차익예정신고”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제74조, 제87조의23”을 “제74조”로 한다.

제130조제1항 중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을 “신규등록한 날 또는 말소등록한 날”로 한다.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041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17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63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19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6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의2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 단서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2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 중 “제89조제3항제4호, 제93조제18항”을 “제89조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93조제18항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 차량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제2호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이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5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제84조의5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그 공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달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4조(법인지방소득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동차세 소유분 수시부과 과세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비과세) ① ~ ⑥ (생 략)	제9조(비과세)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 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 니한다.	⑦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 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차함에 따 라 <u>상속개시일부터 3개월</u> 이 내에 말소등록된 차량	2. ----- ----- ----- ----- ----- -- <u>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 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는 9개월)</u> -----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①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 나 환급한다. 다만, 납세의무자 가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 야 할 가산세는 공제하거나 환 급하지 아니한다.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u>반입된 경우</u> 3. · 4. (생략) ② · ③ (생략)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달부터 <u>1년 동안</u>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생략) 2. 해당 월의 <u>1년 전</u>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	2. ----- ----- ----- ----- ----- --- <u>반입된 경우 또는 같은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된 경우</u>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1년 동안(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달만 해당한다)</u> ----- ---. 1. (현행과 같음) 2. ----- <u>1년 전(해당 월의 과거 1년 내에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에는 신설한 달을 말한다)</u>-----
---	---

하는 경우(해당 월부터 과거 5 년 내에 종업원 수가 1회 이상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월의 종업원분을 신고하 여야 하는 달 ③ ~ ⑤ (생 략)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 정법률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 조까지, <u>제87조의6</u>, <u>제87조의7</u>, <u>제94조</u>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신탁의 이익의 구 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 2항에 따른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 지방소득에서 <u>제2호</u>, <u>제2호의 2</u>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 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 바. (생 략)	-----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 정법률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 ----- -----. ----- ----- ----- <u>제94조</u> ----- ----- ----- ----- ----- -----. 1. ----- ----- ----- <u>제2호</u> ----- ----- ----- ----- 가. ~ 바. (현행과 같음)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u>2의2. 금융투자소득</u>	<u><삭제></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납세지 등) ①·② (생략)	제89조(납세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③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납세지로 한다.	4. ----- ----- ----- ----- -----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u>다. 제103조의13제1항 후단에</u> <u>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같</u> <u>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좌</u> <u>보유자의 인출을 제한한</u> <u>경우 그 금융투자소득에</u> <u>대한 지방소득세: 대통령</u> <u>령으로 정하는 해당 계좌</u> <u>의 개설지</u>	<u><삭 제></u>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 정법률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 정법률
<u>제2절의2 거주자의</u>	<u><삭 제></u>
<u>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u>	
<u>제102조의2(과세표준) ① 금융투</u>	<u><삭 제></u>
<u>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u> <u>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u> <u>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u> <u>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u> <u>한다.</u>	
<u>②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u> <u>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u> <u>법」 제87조의4에 따라 계산한</u> <u>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u> <u>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u> <u>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u> <u>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u> <u>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u>	

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02조의3(세율) 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3억원 초과	60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02조의4(세액계산의 순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제102조의2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2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삭 제>

<삭 제>

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
액에서 제102조의5에 따라 공
제되거나 감면되는 세액이 있
을 때에는 이를 차감하여 금
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
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
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
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
산세를 각각 더하여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제102조의5(세액공제 및 세액감
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
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
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
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
로 한다.

제102조의6(예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7조
의21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예정

<삭 제>

<삭 제>

신고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02조의5에 따른 공제세액 및 감면세액
2. 제98조 및 제102조의8에 따

른 수시부과세액

제102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삭 제>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7조의23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소득세법」 제87조의23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③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세 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금융
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
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02조의5에 따른 공제세액
및 감면세액

2. 제102조의6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제97조 및 제
102조의8에 따라 결정·경정
한 세액

3. 제98조 및 제102조의8에 따
른 수시부과세액

4.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
수세액

제102조의8(수정신고·결정·경
정·수시부과·징수·환급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
소득세의 수정신고·결정·경
정·수시부과·징수 및 환급 등
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
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삭 제>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u>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u>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 ④ (생략)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2(세액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2. (생략)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u>제103조의9제2항</u>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과세표준) ① ----- ----- ----- <u>종합소득 및 퇴직소득</u>----- ----- -----. ②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2(세액계산의 순서)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u>제103조의8, 제103조의9제2항</u> ----- ----- ----- -----.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	---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
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
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
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
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
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 11. (생략)

<신설>

<신설>

제103조의3(세율) ①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
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
준의 1천분의 20

1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과생상품 등: 양
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14. (생략)

② ~ ⑥ (생략)

<신설>

⑧ ~ ⑩ (생략)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신설>

1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⑧ ~ ⑩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8(기장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

납부한다.

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
방소득세의 경우 해당 과세기
간의 반기 중에 계좌가 해지
된 경우에는 그 반기 종료일
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
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삭 제>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는 경
우에는 각 계좌보유자별 특별징
수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소
득세법」 제148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그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④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
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투자
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득세
법」 제148조의2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배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배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삭 제>

⑤ · ⑥ (생략)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
음 표와 같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② (생략)

③ · ④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
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
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의 경우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 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 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소득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후 신고는 제외한다)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한 내로 한다.

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

-----.

1. -----

-----.

-----.

가. -----

의 매매차익,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또는 같은 법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 방식으로 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즉시

나.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87조의23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같은 법 제87조의21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다. (생략)

2. ~ 4. (생략)

5.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 매매차익 -----

4. _____

-- 제74조 -----

-----매매
차익예정신고-----

다.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5. _____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u>제74조</u>, <u>제87조의2</u>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② ~ ④ (생략)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u>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u>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041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17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63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19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6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 ----- <u>제74조</u>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① ----- ----- ----- <u>신규등록한 날 또는 말소등록한 날</u>-----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041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17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63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19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6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	---

제1조의2(적용시한) 제15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u>2024년 12월 31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	제1조의2(적용시한) ----- ----- <u>2026년 12월 31일</u> -----.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12항, 제111조의2, 제112조, 제113조 및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93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u>2025년 1월 1일부터</u> , 제10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 ----- ----- ----- ----- ----- <u>2027년 1월 1일</u> ----- ----- ----- -----.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2조(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관한 특례) 주민세 사업	제12조(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관한 특례) -----

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83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해서는 제8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u>2024년 12월 31일</u>까지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2. (생략) 3. 제87조제1항, 제89조제3항제4호, 제93조제18항,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제103조제1항, 제103조의2제3호, 제103조의3제1항제12호·제13호, 같은 조 제7항, 제103조의8, 제103조의13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03조의59제1항제1	----- ----- ----- ----- ----- ----- ----- ----- <u>2026년 12월 31일</u> ----- ----- ----- -----.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 -----. ----- -----. 1.·2. (현행과 같음) 3. ----- <u>제89조제3항제4호</u>----- ----- ----- ----- ----- ----- -----
--	--

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5	-----
호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	-----
일	--
<u><신 설></u>	<u>4. 제93조제18항의 개정규정: 2027</u>
	<u>년 1월 1일</u>